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 제1차 정례회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9. 3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7호로 2022년 9월 1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2022. 8. 8.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영등포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감면대상자

-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서 재난피해가 확정된 경우에 한함.

나. 감면내용

- 감면세목 : 2022년 재산세 [주택·건축물]
 - 시세 제외(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

○ 감면율

- 반파·전파(유실)된 주택이나 건축물 : 재산세 감면(100%)
- 침수된 주택이나 건축물 : 재산세 감면(75%이하)
- 감면상한액 : 150만원

○ 감면제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감면 제외대상】 고급주택 건축물 등

○ 기타

- 1)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2022년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함. 단, 2022.6.1.익일부터 2022.8.17.까지 소유권변동분에 대해서는 2023년 납세의무성립분에 한함.
- 2)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함.
- 3)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추징함.
- 4)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함.

4. 관계법령: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77조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지방세 감면규모 등】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60조, 제61조, 제66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영등포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2022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감면 적용하며 반파·전파(유실)된 주택이나 건축물의 경우 100%, 침수된 주택이나 건축물의 경우 75% 감면적용하려는 것임.

<감면 규모 추계>

구 분	건수	세액(백만 원)		
		감면 전	감면 후	증감
합계	3,292	798	598	△200
주택	2,463	557	418	△140
건축물	829	241	180	△60

○ 검토 결과

법률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재산세 감면을 통해 폭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세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 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조사와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참 고 자 료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